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71 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권성동·서천호·백종헌

이인선 • 우재준 • 윤한홍

김예지 · 임종득 · 강선영

김대식 • 박상웅 • 최은석

박수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,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 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7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8조의7(중요 통신장비에 관한 인증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수 있다.
 - ②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소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의6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8조의7(중요 통신장비에 관한
	인증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
	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
	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.
	②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
	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
	신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
	의 절차 및 인증기준 등 필요
	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	<u>령으로 정한다.</u>
	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
	의 취소 및 인증시험대행기관
	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
	8조의6을 준용한다.